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사업시설유지관리업

▶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설유지관리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망사고) 사례는 무엇인가요?

» 사업시설유지관리업종에서 최근 5년('18~'22년)간 전체 52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 떨어짐 32, 넘어짐 5, 부딪힘 5, 끼임 3, 산소결핍 2, 기타 5

떨어짐

'20.11. LED조명 설치를 위해 A형 사다리 사용 중 2.6m에서 떨어져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면?

-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러짐 없는 바닥에 설치
-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로 작업

넘어짐

'20.11. 옥상 누수 점검 시 이동 중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려면?

- 바닥 물기·이물질 상시 제거
-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화 착용
- 야간 순찰 시 개인용 손전등 지급

끼임

'18.8. 주차엘리베이터 작동 중 끼여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면?

- 기계식 주차설비 작동 시 출입금지
- 기계 점검 시 작동금지 표지 부착 및 작동하지 못하도록 감시원 배치
- 기계식 주차장 내 사람이 있는지 감지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부착

※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

이것만은 기본!

-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하세요.
- 업무시작 전에는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
-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 안전스티커를 설치·부착하세요.
-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
- 사다리 사용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꼭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조여매세요. ('24.1.26. 30cm 높이에서도 근로자가 떨어져서 사망하였습니다.)



업종별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 동 내용은 중소사업장 이해를 돋기 위해 '22년 배포한 가이드(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QR코드 참고)를 간소화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상세한 법적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사업시설유지관리업)

②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사항 총 15가지 중 **핵심 의무사항을 안내하니**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아래 핵심 의무사항을 **최소 반기 1회는 체크해보세요!!**

핵심 의무사항 하나!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 ▶ **예시** ⇨ 아래는 예시임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립 가능
(방침) “우리의 안전이 곧 우리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목표) “떨어짐(또는 미끄러짐, 넘어짐 등) 사고 00건 감소”, “매월 00회 작업장별 숨은 위험 찾기” 등
(공유·전파)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사업주의 의지를 알리고, 근무 공간이나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둘!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 중 하수, 환경, 폐기업, 제조업, 임업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항)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겸직 가능, 사업주(대표)가 수행 가능)
▶ **예시** 직원 중 선임(반장급) 직원을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직원으로 지정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셋!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사용합니다.

-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비용)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
▶ **예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고소작업대, 안전표지판 설치 비용 등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넷!

◎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을 합니다.

-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아차사고) 보고 등 근로자 안전제안제도를 운영(건의함, 게시판 등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 서식 등은 위험성평가 시스템(오른쪽 QR 참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에 근로자 의견을 듣고, 개선 및 주의사항을 근무 시작 전 조회시간,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무 공간,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유해·위험요인 예시**
 - ◉ 사다리, 난간 없는 작업대 사용 ◉ 작업(이동) 통로 장애물, 미끄러운 바닥
 - ◉ 기계식 주차설비 등 정비·보수·청소 시 전원 미차단
 - ◉ 건물 외벽(달비계) 작업(작업 전 로프 손상 여부, 연결 상태 등 미점검, 안전대 별도 수직구명줄 미체결 등)
 - ◉ 지하 맨홀, 집수정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환기 미실시 등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안내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

핵심 의무사항 다섯!

◎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 ▶ **예시** 화재 등 비상대응 매뉴얼(비상대피도, 비상연락망, 이송 병원 등) 마련, 이전에 발생한 사고별 재발방지대책 마련

우리 사업장은?

예	아니오